(주)광림 제4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4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주)광림 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 2)
 제2-1호 : 사내이사 황태영 선임의 건
 제2-2호 : 사외이사 금창은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강태구 선임의 건 (별첨 3)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 4)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년 12월 13일 오전 9시 ~ 2025년 12월 22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5년 12월 08일

주식회사 광 림
대표이사 송 태 영 (직인생략)

<별첨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9 조의 7【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중략) 있다. ② 제5조의 (중략)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중략)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중략)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의 7【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의 배당분은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우선배당 결의가 없는 총회 다음부터 우선배당 결의가 있는 총회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다. ⑦ 좌동 ⑧ 좌동 ⑨ 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상환기간은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⑪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8【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중략)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중략)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⑨ 제⑦항 또는 제⑧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⑩ 제⑦항 또는 제⑧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9조의8【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의 배당분은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우선배당 결의가 없는 총회 다음부터 우선배당 결의가 있는 총회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다. ⑦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할 수 있다. ⑨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 비율은 이사회가 정한다.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⑩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9【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7 및 제9조의8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7 및 제9조의8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제9조의9【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7 및 제9조의8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10【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중략)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중략)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의10【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중략) 상환할 수 있다. 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상환기간은 (중략)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의 배당분은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좌동 ⑦ 상환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좌동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11【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중략)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중략)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멸,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중략)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⑥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제⑥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9조의11【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의 배당분은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좌동 ⑦ 전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비율은 이사회가 정한다. ⑧ 이익배당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12【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 9조의10 및 제9조의11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제9조의12【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중략)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중략)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중략)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중략)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중략)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중략)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좌동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발행조건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단주 처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10 조의 2【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 (DR)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2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중략)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중략)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중략)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중략)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중략) 사직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중략) ⑧ (중략) ⑨ 삭제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중략)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좌동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좌동) ⑨ 삭제 ⑩ 좌동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15 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중략)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중략) 한다. ④ 제3항의 (중략) 따른다.	제 15 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회사가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가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좌동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중략)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중략)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중략)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중략) 발행하는 경우 6.『상법』제513조 (중략)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략)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중략)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중략)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중략)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은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좌동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신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삭제 6. 삭제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을 한다. (구조조정 등 목적 시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중략)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중략)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중략)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중략)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중략) 준용한다. ⑥ 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제18조 제⑥항을 준용하되 단서조항까지 포함한다.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신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을 한다. (구조조정 등 목적 시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20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중략)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략)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60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중략) 이사회가 정한다.	제 20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좌동 ② 좌동 ③ 삭제 ④ 좌동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2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2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중략)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중략)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중략)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좌동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할 수 있다. ③ 좌동 ④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로 한다.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상법 등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36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 후보자의 선출은 이사회에 이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중략)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중략)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중략)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제 36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36 조의 1【이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1【이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43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사외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 지분거래, 주식연계 사채거래, 유상증자 혹은 신용공여의 경우 이사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략)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삭제 ③ 좌동 ④ 좌동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46 조의1【위원회】 ① 회사는 (중략)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1) 감사위원회 2)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투명경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중략)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각 위원회의 관한 (중략)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6 조의1【위원회】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46 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중략) 구성한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중략) 선임한다.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후보자의 모집 및 조사 3) 이사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중략) 합의로 결정된다. ⑤ 기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중략) 결정에 의한다.	제 46 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제 46 조의3【투명경영위원회】 ① 투명경영위원회는 (중략) 으로 구성한다. ② 투명경영위원회의 의장은 (중략) 선임한다. ③ 투명경영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중략) 거래 등을 포함) 2) 영업활동과 무관한 투자거래 3) 영업활동과 연관된 금 [일십억]원 이상의 투자거래 4) 금전대여, (중략) 성격의 신용공여 행위 5) 신주발행 및 주권연계사채 발행	제 46 조의3【투명경영위원회】 삭제	비상장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6) 기타 위원회 (중략) 판단한 사항 ④ 위원회의 의사록에 (중략) 준용한다. ⑤ 투명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중략) 찬성으로 결정된다. ⑥ 투명경영위원회의 (중략) 경위를 충실하게 기재하기로 한다.	삭제	
제 4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중략)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중략)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중략)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중략)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9 조【감사의 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둘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0 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중략)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 50 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삭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1 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51 조【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2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중략)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중략)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중략)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략)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략)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중략) 소집할 수 있다.	제 52 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3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3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3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4 조【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54 조【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6 조【재무제표와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중략)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중략)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중략)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략)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중략)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재무제표와 등의 작성 등】 ① 좌동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4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제 57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감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60 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60 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삭제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비상장사 전환에 따른 개정
부칙 (신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2025년 12월 23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

<별첨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황태영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관계	신규선임여부
황태영	68.07.09	'2021~현재 (주)광림 RE사업본부 본부장 '2023~현재 (사)한국풍력에너지학회 이사 '2024~현재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현장전문교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규선임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유무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제2-2호 : 사외이사 금창은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관계	신규선임여부
금창은	84.07.28	'2020~'2023 미래산업(주) 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규선임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유무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별첨 3> 제3호 의안 : 감사 강태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관계	신규선임여부
강태구	69.08.09	'2012~현재 세무법인세광 대표세무사 '2013~현재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고문세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규선임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유무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별첨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당기(제47기)	전기(제46기)
주주총회 승인금액	150,000,000원	-